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2가단7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2. 1. 접수 제54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김종신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이 100%출자한 정부재출자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등록 하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설대여업 및 연불판매업 등을 영위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갑 제7호증 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소외 합자회사 D (이하 “(합)D”으로 약칭합니다.)은 2016.4.28. 원고와 2건의 할부대출 약정을 체결한 주채무자입니다.
(갑 제1호증 할부대출 약정서, 대출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첨부)

소외 C 은 원고가 2016.4.28. (합)D 과 2건의 할부대출 약정을 체결할 당시, (합)D 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었습니다. 즉, 소외 C 은 원고에게 상법상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자로서, 소외 C 은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금전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갑 제6호증 (합)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갑 제4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1203 대여금 등 지급명령 결정문 첨부)

피고 B 은 소외 C 으로부터 2017.02.0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입니다.

(갑 제5호증 E F 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피보전채권

: 소외 C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금전 지급채권
(상법상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연대채권)

가. 할부 대출 계약의 체결

원고는 소외 (합) D와 2016.04.28.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할부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연번	구분	할부대출 계약 A	할부대출 계약 B	비고
①	여신번호	G	H	
②	대출금액	금75,000,000원	금100,000,000원	
③	약정이율	연9.9%	연9.9%	
④	납입기일	매월25일	매월25일	
⑤	계약체결일	2016.4.28.	2016.4.28.	
⑥	대출만기일	2019.4.25.(36개월)	2020.4.25.(48개월)	
⑦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⑧	매월 상환 원리금	금2,416,510원	금2,531,450원	
⑨	연체이자율	연17%	연17%	
⑩	할부물건	뉴그랜버드 (차량번호 1)	유니버스 (차량번호 2)	매각 후 2018.9.6. 배당完
⑪	무한책임사원	C	C	2016.4.28. 계약 체결 당시 기준
	원채여부	연체중	연체중	

(갑 제1호증 할부대출 약정서, 대출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첨부)

(갑 제2호증 (합) D, C 인감증명서 첨부)

나. 소외 (합) D의 할부금 연체로 기한이익의 상실

소외 주채무자 (합) D은 할부대출 약정에 의거하여 약정한 할부금
을 납입기일(매월 25일)에 매월 성실히 납부할 약정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제3회차인 2016년 7월분까지 할부금을 지연하여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연체중입니다. 이에 소외 주채무자 (합)D는 할부대출약정 조항 제7조 제①항,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 ②항 2호에 의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할부대출 약정서, 대출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첨부)

(갑 제3호증 2017.1.25.자 법적절차 착수 통지서 첨부)

다. 소외 C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금전지급 채권의 존재
(상법상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연대책권)

① 할부대출 계약 체결 당시 (합)D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소외 C은 원고와 2016.4.28. 할부대출계약 체결 당시, (합)D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합)D의 대표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이었습니다.

(갑 제6호증 (합)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② 소외 C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금전 채권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상법상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연대책권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10.12.자 지급명령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1203 대여금 등)은 2020.11.24.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1203 대여금 등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금전채권은 2022.01.21.기준 금273,158,718원 및 이중 162,601,518원에 대한 2020년 9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7%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입니다.

[2022.01.21.기준 채권액은 금310,191,771원(=273,158,718원+37,033,053원)입니다.]

(갑 제4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1203 대여금 등 지급명령 결정문 첨부)

즉, 소외 C은 원고에게 금273,158,718원 및 이중 162,601,518원에 대한 2020년 9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7%비율에 의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소외 C의 사해행위

① 유일부동산 처분의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判例의 태도

○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사해행위 취소등]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② 소외 C의 사해행위

소외 C의 책임재산은 별지 부동산 목록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E호가 F호가 유일하였는데, 소외 C은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의 금전 채권에 기한 집행이 예상되자 2017.2.1. 채무자 B에게 처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 제4호증 2017.1.25.자 법집절차 착수 통지서 첨부)

(갑 제5호증 E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소외 C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도의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17.2.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2.1. 접수 제54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E F 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소외 C의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어

이에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02.01.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 지붕 6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단지형다세대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53.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 지 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 1060.2㎡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060.2분의 26.36

